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43
----------	-----

2021. 6. 23.(수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기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6월 9일

-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기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주5일 근무 확대에 의한 관광 수요 증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,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,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민 우선 예약제 확대 운영(안 제11조)
 - 현행 20% → 개정안 40%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띄어쓰기, 용어정비 등
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6조, 제17조, 제21조)
- 별표 1, 별표 2 구분의 “산림휴양관”을 “무궁화관”으로 명칭 변경

3. 검토보고 요지(건설환경소방전문위원 노형우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관광 수요 증가와 산림치유,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관광 수요 증가와 산림치유,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, 제명 띄어쓰기, 용어정비 등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전일(前日)”을 각각 “전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징수하는”을 “받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국·공·사립”을 “국립·공립·사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”를 “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

32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4호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」 제4조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」 제4조”로 조문을 정비함.

- 제4조 중 “충청북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, 제6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,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, 제9조제1항 중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조문을 정비함.

- 제11조제2항 중 “20퍼센트”를 “4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납입하거”를 “납부하거”로, “성립된”을 “이루어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사용일로”를 “사용일”로 등 도민 우선 예약제 확대 운영 및 조문 정비사항을 반영함.

-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경우 :”를 각각 “경우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2”를 “별표 2”로, 제13조제2항 중 “별표3”을 “별표 3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조문을 정비함.

- 별표 1 기호(□) 구분의 산림휴양관란 “산림휴양관” 및 별표 2 구분의 “산림휴양관”을 “무궁화관”으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입법예고(‘21. 5.20.~‘21. 5.2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○ 관련부서에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주5일 근무 확대에 의한 관광 수요 증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, "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"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5. 토 론 요 지 : "생략"

6. 심 사 결 과 : "원안가결"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」 등

의안번호	제 743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기창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5월 31일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기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5월 31일
발 의 자 : 김기창, 서동학, 박우양,
연철흙, 전원표, 황규철,
이상식

1. 제안이유

-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,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 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,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도민 우선 예약제 확대 운영(안 제11조)
 - 현행 20% → 개정안 40%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띄어쓰기, 용어정비 등
(안 제3조, 제4조, 제6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6조, 제17조, 제21조)
- 별표 1, 별표 2 구분의 “산림휴양관”을 “무궁화관”으로 명칭 변경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 의 :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
- 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5. 20. ~ 2021. 5. 26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전일(前日)”을 각각 “전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징수하는”을 “받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국·공·사립”을 “국립·공립·사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”를 “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4호 중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」 제4조”를 “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충청북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별표1”을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개·보수”를 “개수·보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20퍼센트”를 “4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납입하거”를 “납부하거”로, “성립된”을 “이루어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사용일로”를 “사용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경우 :”를 각각 “경우: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2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별표3” 을 “별표 3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아니할” 을 “않을” 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별표3” 을 “별표 3” 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5호 중 “하여서는 아니” 를 “해서는 안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아니한다” 를 “않는다” 로 한다.

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한다” 를 “않는다” 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아니한” 을 “않은” 으로 한다.

별표 1 기호(□) 구분의 산림휴양관란 “산림휴양관” 을 “무궁화관” 으로 한다.

별표 2 구분의 숲속의집, 복합휴양관, 산림휴양관란 중 “산림휴양관” 을 “무궁화관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주말”이란 <u>금요일, 토요일</u> 및 <u>법정공휴일의 전일(前日)</u>을 말한다.(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)</p> <p>3. “주중”이란 <u>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(前日)</u>을 제외한 <u>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</u>를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“시설사용료”란 <u>자연휴양림</u> 안에 설치한 <u>산림휴양시설</u>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<u>징수</u>하는 <u>요금</u>을 말한다.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“산림휴양 통합플랫폼”이란 <u>국·공·사립</u>에서 <u>조성·운영</u>하고 있는 <u>자연휴양림, 야영장</u> 등 <u>산림휴양시설</u>을 <u>통합하여</u> <u>예약할 수 있는</u> <u>정보시스템</u>을 말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전날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 <u>전날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<u>받는</u> -----.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국립·공립·사립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8. (생략)

9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

10. ~ 13. (생략)

14. “명예도민”이란 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」 제4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자를 말한다.

15. ~ 17. (생략)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조령산자연휴양림(이하 “자연휴양림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6조(휴관일) ① (생략)

② 기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

③ (생략)

제7조(이용시간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특별히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입장제한) 다음 각 호의 어

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-----
-----.

10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----- 「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」 제4조-----
-----.

15. ~ 17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적용범위) -----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-----
-----.

제6조(휴관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그 밖에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이용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-----

-----.

제8조(입장제한) -----

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제9조(시설사용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0조(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(생략)

2. 시설의 개·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

3. (생략)

4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(생략)

제11조(예약신청 및 성립) ① (생략)

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 인증 기업·기관 재직자는 숙박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

----- 대
해서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시설사용료 등의 징수) ①

----- 별표 1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 개수·보수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예약신청 및 성립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40퍼센트 -----

예약하게 할 수 있다.

③ 예약자 명의로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도에서 지정된 계좌에 예약금을 전액 납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,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.

④ (생략)

제12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: 면제
2. 도지사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: 면제
3.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: 면제
4. ~ 6. (생략)

-----.

③ -----

----- 날
부하거-----
----- 이루어진 -----.
----- 사용일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시설사용료 등의 감면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경우: --
--
2. -----
----- 경우: --
--
3. -----
----- 경우: --
--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.

제13조(위약금 처리) ① (생략)

②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와 승인 또는 허가 없이 매매, 교환하여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.

③ (생략)

④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14조(환불처리) ①·② (생략)

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다.

② -----
----- 별표 2-----
--.

제13조(위약금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별표 3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않을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환불처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 별표 3-----

---.

④ · ⑤ (생략)

제16조(이용객 준수사항) 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(생략)

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용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(손해배상) ① · ②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2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이용객 준수사항) 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
----- 해서는 안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않는다.

제17조(손해배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않는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준용) -----
않은 -----

-----.

관계법령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9조의7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“이용료“라 한다)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② <생략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.